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농림수산위원회
1994. 12. 26.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 일자 : 1994년 12월 22일
- 회부 일자 : 1994년 12월 22일

다. 상정 일자 : 제109회 정기회

- 제 4 차 농림수산위원회 (1994. 12. 23)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정국장 손 문 주)

가. 제안 이유

-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 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 양곡가공업을 희망하는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동 업무를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 병 생)

본 개정조례안은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양곡가공업 시설의 등록등의 사무를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위임 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 추진의 일원화면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없 음 "

5. 검 토 요 지 :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 원 안 가 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 없 음 "

9. 별 첨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